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4
----------	-----

제출년월일 : 2021. 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방안을 규정하여 재난·재해 발생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명시(제1조~제2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제3조~제4조)
- 다.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제5조~제6조)
- 라. 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제7조)
- 마.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방법(제8조)
- 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0. 22. ~ 2020. 11.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평창군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

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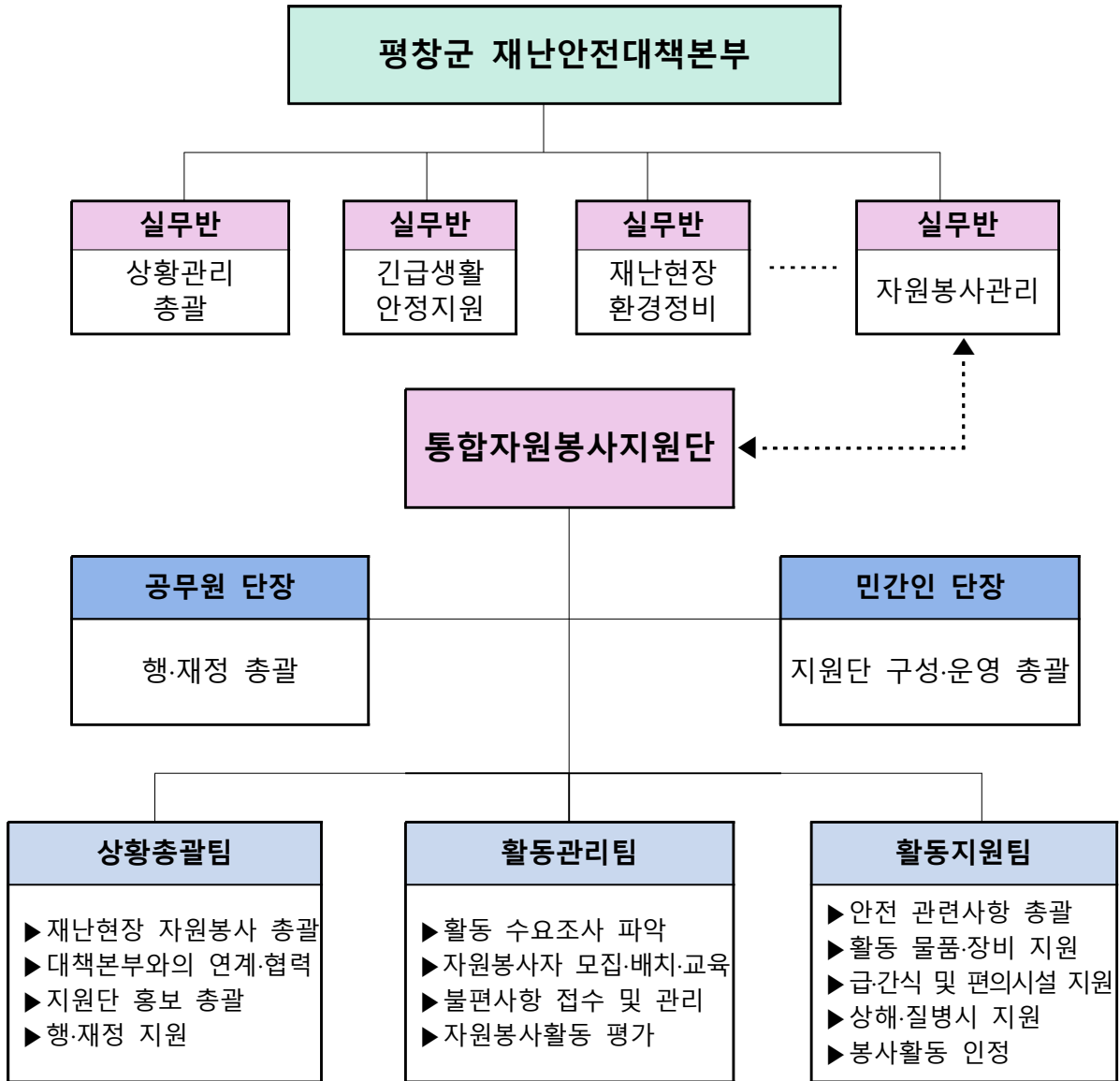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예시 >

팀명(예시)	직위	담당 사무
단장	평창군 행정과장	▶ 지원단 행.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평창군 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평창군 행정과 주무관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활동관리팀	자원봉사센터 팀장	▶ 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 ▶ 자원봉사자 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
	자원봉사센터 교육주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모집, 배치, 교육 ▶ 자원봉사활동 평가(모니터링, 활동기록 등)
활동지원팀	자원봉사센터 팀장	▶ 재난현장 자원봉사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전산주임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자원봉사자 상해·질병시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비 고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관련 법령 발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2019.12.3. 공포, 2020.6.4.시행)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제10호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① 법 제34조의 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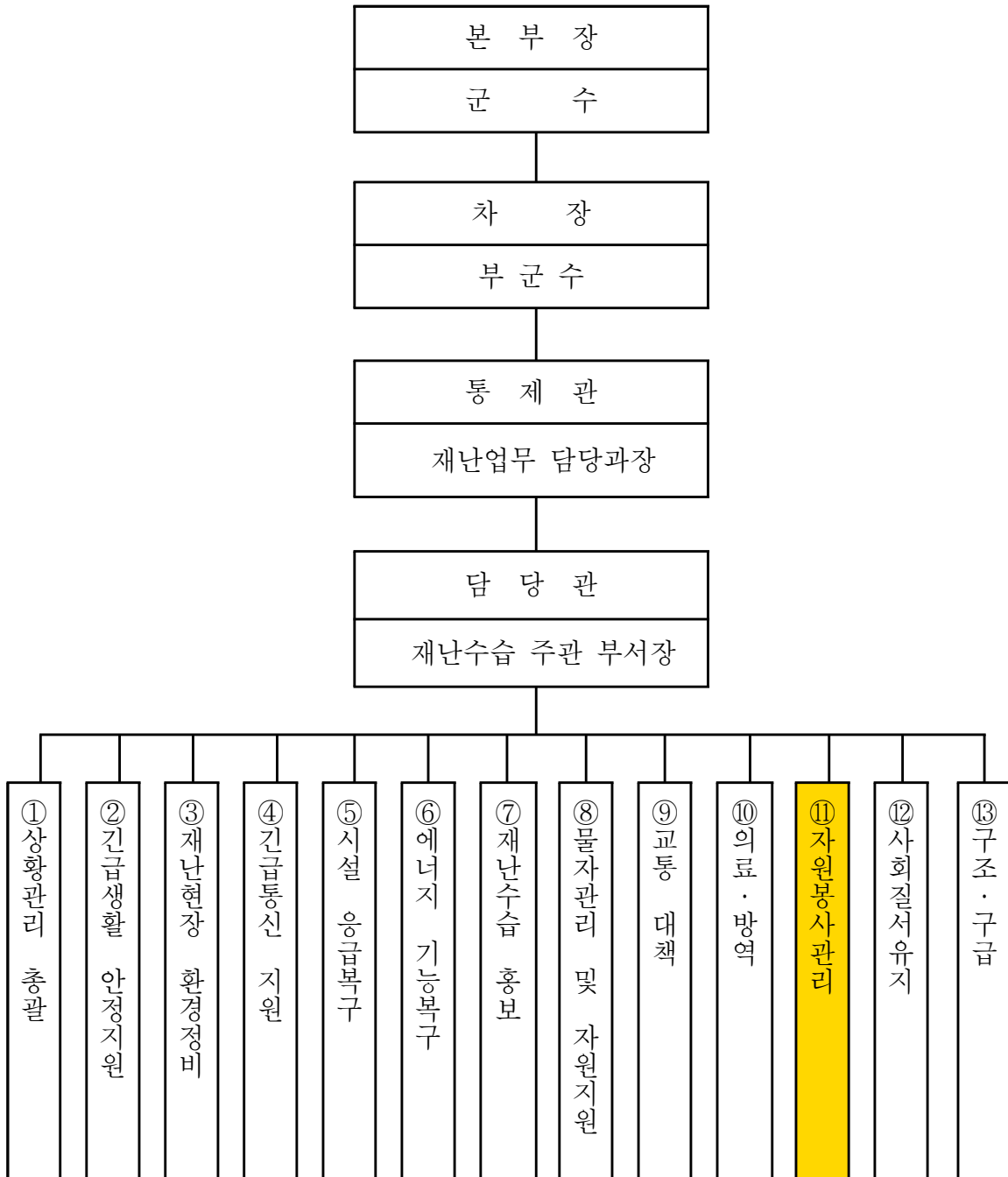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9호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6조제1항제2호라목
 라. 대책본부 구성 체계도는 별표 7과 같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 (제6조제1항제2호라목 관련)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훈련비 및 재난·재해 발생 시에 따른 운영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훈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과장 최찬섭
연락처	(033) 330 - 2210